

여신거래 추가약정서 (기한연장, 한도변경, 조건변경용)

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앞

111

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은행과 약정한 년 월 일자 여신(계좌번호:)의 거래조건을 제 1 조와 같이 변경하
 며, 기존 약정내용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.

본 인 :	(인)	주소 :
담보제공자 :	(인)	주소 :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
제 1 조 기한연장, 한도변경 및 조건변경 (거래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, 해당되는 "□"에 "V"표시합니다.)

거래조건	변경 전				변경 후			
☐ 여신금액	금 원				금 원			
☐ 여신기간 종료일	년 월 일				년 월 일			
☐ 연 이자율	☐ 고정금리 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선택]		여신기간 종료일까지 ☐ () % ☐ 기준금리() + 가산금리() %		☐ 고정금리 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선택]		여신기간 종료일까지 ☐ () % ☐ 기준금리() + 가산금리() %	
	☐ 변동금리 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선택] ※금리변동주기 () 개월		기준금리 ☐ () 물 유통수익률 ☐ () 물 금융채유통수익률 ☐ () 물 국고채유통수익률 ☐ 수신금리 연동	가산금리 + () %	☐ 변동금리 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선택] ※금리변동주기 () 개월		기준금리 ☐ () 물 유통수익률 ☐ () 물 금융채유통수익률 ☐ () 물 국고채유통수익률 ☐ 수신금리 연동	가산금리 + () %
	☐ 보증료율		☐ () %		☐ 보증료율		☐ () %	
	※ 변경 후 이자율은 제 6 조에서 정한 우대 이율 () %p 를 적용하여 인하된 금리입니다.							
☐ 자동이체일	() 일, 자동이체 계좌()				() 일, 자동이체 계좌()			
☐ 거치기간	() 개월, (거치기간 종료일: 년 월 일)				() 개월, (거치기간 종료일: 년 월 일)			
☐ 담보변경	담보종류				담보종류			
	담보물 소재지				담보물 소재지			
	담보(감정)가액				담보(감정)가액			
☐ 중도상환해약금	☐ 대상 ☐ 비대상	☐ 중도상환해약금률() %		☐ 대상 ☐ 비대상	☐ 중도상환해약금률() %			
☐ 기타 조건변경								
조건변경 사유								

제 2 조 여신금리의 적용

- ① 여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 1 조의 변경 전 여신기간 종료일부터 변경 후 연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 다만, 여신기간 종료일을 경과하여 기한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서의 계약 체결일부터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- ② 여신의 담보 변경, 여신 한도금액 증액, 금리 감면 등 여신금리요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서의 계약 체결일부터 제 1 조의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
제 3 조 중도상환해약금

본 여신을 기한연장 한 경우 제 1 조의 변경 후 여신기간 종료일 전에 여신을 상환할 때에는 여신거래약정서 제 1 조 및 제 7 조와 이 약정서 제 1 조의 중도상환해약금 거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단, 최초 여신기간 시작일로부터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3 년을 경과한 후 상환할 때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 4 조 인지세의 부담

-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② 여신한도금액을 증액하는 경우, 인지세액은 증액 후 한도금액에 대한 인지세액에서 증액 전 이미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, 한도를 감액하거나 기한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③ 제 1 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제 5 조 자동연장

기한연장 조건에 동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여신기간 종료일에 여신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 다만, 여신기간 종료일 기준,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취급 거절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환조건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신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.

제 6 조 금리 우대 조건

- ① 제 1 조의 변경후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본인이 선택한 금리 우대 항목의 우대 이율만큼 인화된 이율이며, 우대 항목별 적용기준은 아래 기재된 각 항목의 우대 조건 및 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금리 우대 항목	우대 조건	우대 이율
☐ ()	()	연 ()%p
☐ ()	()	연 ()%p
☐ ()	()	연 ()%p

- ② 제 1 항의 금리 우대 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제 1 항의 우대 조건에 별도로 적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, 우대 이율은 이 약정서의 계약 체결일부터 여신기간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. 다만, 기한연장인 경우 변경 전 여신기간 종료일부터 적용되며, 여신기간 종료일을 경과하여 기한연장을 하는 경우 이 약정서의 계약 체결일부터 적용됩니다.
 - 본인이 여신 계약 체결 시 제 1 항에 따른 금리 우대 항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, 자동으로 우대 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
 - 여신 계약을 철회하거나 약정 기일 전 해지한 경우, 여신 재신청 시에는 제 1 항의 금리 우대 항목이 부활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제 7 조 약정의 효력

이 약정서와 「여신거래약정서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이 약정서의 효력이 우선하며,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신거래약정서」를 따릅니다.

2023. 09. 14. 시행